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862

제출일자 : 2026. 8. 21.
제 출 자 : 달성군수

1. 제안이유

장학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제한 규정에 대하여 다른 장학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장학금의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변경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」 제7조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내용 변경(안 제7조제2항)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1조제1항
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」 제6조 및 제7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

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(2) 입법예고(2026. 7. 20. ~ 8. 10.) 결과 : 의견 없음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(7) 비용추계서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(붙임 참조)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장학금의 지급 등) ② 제4조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이 국가, 다른 지방자치단체, 기업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한국장학재단의 해당 연도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기준에 따른 중복지원방지 대상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장학금 지급액이 해당학기 등록금에 미달할 때 제6조 각 호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장학금의 지급 등) ① (생 략) ②장학생은 1세대 1명으로 하며 국가, 지방공공기관, 그 밖에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그 장학금 지급액이 제6조에 따른 장학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.	제7조(장학금의 지급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4조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이 국가, 다른 지방자치단체, 기업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한국장학재단의 해당 연도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기준에 따른 중복지원방지 대상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장학금 지급액이 해당학기 등록금에 미달할 때 제6조 각 호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81조(이장 및 통장의 임명)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,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·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·면장·동장이 임명한다.

③ 읍장·면장·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·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□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

제6조(장학금액)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단, 예산의 사정에 따라 해당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고등학생 : 50만원 이내
2. 대학생 : 100만원 이내

(전문개정 2024. 2. 13.)

제7조(장학금의 지급 등) ① 장학금은 제4조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

② 장학생은 1세대 1명으로 하며 국가, 지방공공기관, 그 밖에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그 장학금 지급액이 제6조에 따른 장학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.(전문개정 2024. 2. 13.)

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대구광역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에 의하면 이장자녀 장학금은 대학생 100만원 이내, 고등학생 50만원 이내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른 장학금을 지급 받은 경우 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음. 이에 기준금액을 해당 학기 등록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개정하여 지급대상의 기준금액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장학생 수 및 그 지급액의 증가가 예상됨.(안 제7조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」(제9조제5항제1호)

3. 미첨부 사유

- 현재 이장자녀 장학금 예산은 10,000천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매년 같은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는 바 기존 예산 범위내에서 추진이 가능함.

작 성 자			
소속 및 직위	달성군청 총무과	성명(연락처)	박지훈(2223)